

1. 개정이유

중소기업사업주 중 예술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안 제43조제1항, 별지 제56호의1,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예술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달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별지 제56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강진단서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제56호의3서식 및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
5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 ----- ----- ----- -- <u>별지 제56호서식의</u> ----- ----- ----- ----- ----- <u>건</u> <u>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1호의 사업주: <u>별지 제56호서식</u>		<삭 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 <u>별지 제56호의2서식</u>		<삭 제>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 여부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진단서(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에 "√" 표를 합니다.
7.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로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근무시간	부터	까지
	업무 내용				

사업주 직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아니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제4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부			[]예, []아니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3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여부			[]예, []아니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자동차의 종류		[]노선버스, []비노선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아니오	
	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자동차(1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아니오	
	건설기계 종류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자동차(1톤 초과), []승용·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도보, []자전거, []지하철, []기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예, []아니오	
	예술 분야	[]무용,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기타			
	예술활동 유형	[]창작, []실연, []기술지원			
	계약자명				
	계약기간	~		계약금액	원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기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여부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여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승인 []불승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6.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7.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신청인은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팔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 ②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④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⑤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 ⑥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공연'에, 연주,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후(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6호의2서식 통합)>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	근로자 사용 ☐	근로자 미사용 ☐
---	---------------------------------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가입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등급(원)	
	업 종 명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여부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 사업,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또는 퀵서비스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진단서(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6.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7.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에 "√" 표시를 합니다.
7.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경우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8.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또는 법인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근로자 수			
	특정업무와의 관계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그 밖의 사항			
	변경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건강진단서(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번거로워도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작성방법

1.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란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또는 법인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근로자 수				
	특정업무와의 관계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그 밖의 사항				
	변경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건강진단서(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 발송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등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해지 의사 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작성방법		
1.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란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